

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

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86조의3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			
이륜 자동차	등록번호	차대번호	소유자성명(상호)			
	최초신고일	차명(제작사)	제작일자			
	모델연도	이전주행거리	현주행거리			
현재 검사유효기간		다음 검사유효기간				
종합판정		재검사기간				
관능 및 기능검사	판정	검사항목	측정치	허용기준	판정	
	부적합내역	배출 가스	일산화탄소(CO)	%	%	
			탄화수소(HC)	ppm	ppm	
	소음	배기소음	dB(A)	dB(A)		
		경적소음	dB(C)	dB(C)		
차 체	길이(mm) :	차량중량(kg) :	원 형식 :	특기사항		
	너비(mm) :	총 중 량(kg) :	동 배기량(cc) :			
	높이(mm) :	승차정원(명) :	기 정격출력/회전수 :			
검사원	관능 및 기능	배출가스	소음			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
 륜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
 (지정정비사업자)



유의사항

- 검사결과는 적합이므로, 고객님의 다음 검사기간은 검사만료일로부터 전·후 31일입니다.(0000-00-00~0000-00-00) : (적합인 경우)
- 검사결과는 부적합이므로, 정비를 완료한 후 재검사 기간(0000-00-00)까지 검사를 시행한 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: (부적합인 경우)